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안숙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9

발의연월일 : 2026. 10. 30.

발 의 자 : 김안숙 의원(1명)

찬 성 자 : 박미정·안종숙·하서영·오지환·정순용·정민우·김형우·정지광·김해바른

1. 제안이유

서초구의회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사기 진작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생일 특별휴가 등 관련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일 특별휴가 및 신규·저연차 공무원 격려 특별휴가 제도화(안 제14조)

나. 출산 및 사망 등 경조사 특별휴가 확대(안 별표5)

다. 그 밖의 어색한 문구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있는 사항”을 각각 “있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직·숙직·방호원”을 “일직·숙직”으로, “방지하고”를 “방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을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0조의3”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으로, “기관장”을 “소속기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로, “지휘·감독”을 “지휘감독”으로 한다.

제11조 중 “자유가”를 “자유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을 “직무수행에 뛰어난”으로, “공무원에게”를 “공무원은”으로, “부여할”을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을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일, 5년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2 중 “(제2조제3항 관련)”을 “(제2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제3호 중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을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시보 임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비밀엄수) ---------- ---------- ---------- ---------- ---------- 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2. ---------- ---------- ---------- ---------- ---------- ------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3. ---------- ---------- ---------- -------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 ---------- ---------- ---------- ---- 있는 경우
제6조(친절·공정) ① (생 략)	제6조(친절·공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수행할 때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 ---------- 방지하고, ----------.
②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④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생 략)	제9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소속기관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생 략)	제10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지휘감독----------.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생활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생활보장) ---------- 자유를 ----------.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
제14조(특별휴가) ①·② (생 략)	제14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직무수행에 뛰어난 ------- -------- 공무원은 -------- ---------- 받을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일, 5년 이상 --- ---------- ---------- ---------- ---------- ---------- ---------- ----------.
<신 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신 설>

[별표2]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팀장이 담당한다.

[별표3]

[별표 3]

공 직 자 의 행 동 규 범(제5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근검, 절약한다.
◦품위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 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수 있다.

⑦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2]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팀장이 담당한다.

[별표3]

[별표 3]

공 직 자 의 행 동 규 범(제5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근검, 절약한다.
◦안내는 공손한 태도로 친절하게 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처리한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별표4]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별표5]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5]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안숙 의원 발의) 서명부

발의자		찬성자	
의원명	서명.날인	의원명	서명.날인
김안숙			